

재단법인 구리시청소년재단 정관

(제정) 2002. 12. 20.
(일부개정) 2007. 02. 16.
(일부개정) 2010. 03. 30.
(일부개정) 2012. 07. 13.
(일부개정) 2012. 12. 24.
(일부개정) 2016. 03. 14.
(전부개정) 2020. 02. 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구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리시 미래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구리시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소재지) 재단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32-10에 둔다.

제4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2. 청소년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
3.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청소년 관련 시설 및 사업에 대한 위탁 또는 대행 운영·관리
4. 시민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한 사업

- 제5조(수익사업)** ① 재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재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6조(임원) ①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대표이사 1인
3. 이사 15인 이내 (이사장 및 대표이사 포함)
4. 감사 2인

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구성) ①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임 없이 당연직 이사가 된다.

1. 대표이사
2. 시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

③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④ 감사는 2인으로 하되 1인은 구리시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선임직 1인은 회계 및 법률에 지식이 있는 공인회계사를 선임한다.

제8조(대표이사)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공개채용하며 이사장이 임명하고, 구리시청소년수련관장을 겸직한다.

1. 공무원 4급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재단 3급 직원으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상근직 이사급으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 관련 분야에 대한 경영능력과 조직능력을 갖춘 전문 경영인
5. 청소년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학식과 경륜이 있는 사람으로 관련 대학 강의경력 또는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초·중·고등학교 학교장으로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사람

제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행한다.

1. 재단의 재산상황의 감사
2. 재단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시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재단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대표이사, 선임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이사 및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③ 이사회는 선임된 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 해임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때
3. 기타 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4.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항에 의하여 해임된 자를 다시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또한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7조

제2항 제2호의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필요 시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직원의 임면)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이사회

제15조(설치 및 구성)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16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1회,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각각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이사장은 전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서면의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규정의 제정 및 변경
8. 기본재산 및 기금의 설정
9.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재단의 운영상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0조(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4장 재산과 회계

제21조(재산의 구분)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재산과 보

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출연 받은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표 1” 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재단은 성립한 때 연도 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재산의 관리) ①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재단이 매수,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채납의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과 「구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③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표 1” 의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3조(운영재원) ①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시의 출연금
2. 사업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운영재원은 대표이사가 관리 운영하되 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4조(기금의 설치 및 관리)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및 공공단체로부터의 기금 출연금
2. 단체 또는 개인이 기부목적으로 출연하는 현금·물품·기타재원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기타수익금

③ 기금은 재단이 관리 운영하되 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5조(차입금) 재단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2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결산)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세입으로 계상한다.

제30조(계속비) 재단은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1조(임원의 보수) 상근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에 출석하는 이사 중 공무원이 아닌 이사

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응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재단의 임직원
2. 재단의 임직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3. 재단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재산의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응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4조(재단의 해산) ① 재단을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주무관청(경기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을 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시키되 그 방법은 이사회가 의결로 정한다.

제35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주무관청(경기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규정) 이 정관으로 정한 것 이외에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파견 등) ① 재단의 사무 또는 시설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재단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8조(공고) 재단의 설립·해산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시의 시보 또는 신문 등에 게재한다. 다만,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준용)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구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경기도)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종전의 재단법인 구리시청소년수련관 정관에 따라 선임된 이사에 대한 규정은 현재 임기 만료일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기 명 날 인 부

직 위	성 명	서 명(날인)
이 사 장		
대표이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감 사		
감 사		

[별표 1]

기본재산 목록

재산명 (용도별)	수량(평)	평가액	비고
출연금 이	하	300,000천 원 여	금융권에 장기예금 예치 백

(재)구리시청소년수련관 설립당시 임원 명단

직 위	성 명
이 사 장	이병만
이 사	허봉운
이 사	김영식
이 사	김용호
이 사	최고병
이 사	지홍우
이 사	김대인
이 사	탄성은
이 사	채형도
이 사	조순영
이 사	구창희
이 사	김정숙
이 사	장석화

(재)구리시청소년수련관 현재 임원 명단

직 위	성 명
이 사 장	조정아
이 사	전명선
이 사	신재욱
이 사	김영심
이 사	김영식
이 사	이장범
이 사	박정욱
이 사	이격주
이 사	권정미
이 사	김효경
이 사	신은성
이 사	정성순
감 사	강동호